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등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07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5. 3. 11.
3. 회부연월일: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리조치 후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8조의3(직무배제) ① <u>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위해,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59조의2(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① <u>폭력행위 등 대통령령으로</u>

현행	개정안
	<u>정하는 중대한 경우 교원의 휴직 및 휴직한 교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 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u> <u>2. 제59조제1항제1호(불임·난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여부</u> <u>3.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u> <u>4.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이 끝난 교원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u> <u>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u>

현행	개정안
	<u>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u> <u>통보받은 임용권자는 관계 법</u> <u>령에 따라 해당 교원을 조치하</u> <u>여야 한다.</u> <u>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u> <u>영, 심의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등에 대한 질병휴직 필요성, 휴직 종료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교원 등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심의하는 질병휴직위원회(「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와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를 운영하고 있음.

[표 1] 시·도교육청 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 현황

구분	질병휴직위원회(자문)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심의)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교육부 예규)	• 각 교육청별 규칙
운영	• 전체 17개 교육청	• 서울 등 14개 교육청 * 부산, 경기, 충북 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대상	• 교육공무원 중 해당 교육공무원	• 전체 교원 중 해당 교원
심의·자문 사항	•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아래 조항의 조치(휴직, 직권 면직) 필요성 • 아래 조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7호의3(불임·난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래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58조제1항제1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경북교육청은 교원 직무수행심의회위원회로 운영

2. 서울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 심의사항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에 대한 것으로 규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 및 제2조, 각 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 규칙」 제1조 및 제2조 내용 정리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준으로,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에서는 2022년 4건, 2023년 20건, 2024년 41건, 2025년 2월 기준 5건이 심의(자문 포함, 이하 동일)되었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교육청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2] 시·도교육청 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2.	합계
서울	-	2	5	-	7
부산	-	1	-	-	1
대구	-	-	-	-	0
인천	2	2	9	1	14
광주	-	-	-	-	0
대전	-	-	-	-	0
울산	-	1	2	-	3
세종	-	-	-	-	0
경기	-	2	3	-	5
강원	-	-	-	-	0
충북	-	1	6	2	9
충남	-	3	3	-	6
전북	2	3	3	1	9
전남	-	-	1	-	1
경북	-	2	8	-	10
경남	-	-	1	1	2
제주	-	3	-	-	3
합계	4	20	41	5	70

자료: 교육부

위원회 심의건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거나,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하여 면직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해당 사안의 의견청취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리조치 후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위원회 설치 근거, ② 심의사항, ③ 심의결과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먼저, 개정안 제59조의2제1항은 폭력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교원의 휴직 및 휴직한 교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개정안은 위원회 명칭을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현행 위원회 명칭이 ‘질환교원’으로 특정되어 개정안에 따라 확대(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교원의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심의 포함)된

위원회의 기능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 목적이 교원의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는 명칭인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두고 있는데, 교육감은 사립 초·중등학교를 지도·감독하고 해당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¹⁾ 적합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심의목적을 ‘폭력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교원의 휴직 및 휴직한 교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여, 심의범위를 ‘폭력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② 다음으로, 개정안 제59조의2제2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제1호), 불임·난임을 제외한 질병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여부(제2호), 질병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제3호), 질병휴직의 기간이 끝난 교원의 직권 면직 적용 대상 여부(제4호)를 규정함.

이 중, 불임·난임을 제외한 질병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여부(제2호), 질병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제3호), 질병휴직의 기간이 끝난 교원의 직권 면직 적용 대상 여부(제4호)는, 현행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유사함.

한편,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제1호)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를 신설된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58조의3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함.

이는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학교의 장이 신속하게 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하여 분리조치 되었던 교원의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교원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고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신체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²⁾, 교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분리조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분리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가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분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8조의3제2항에서 위임하는 바와 같이, 분리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하여 분리된 교원에 대한 처우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로, 현행법에서 분리조치 사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따라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³⁾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⁴⁾ 등이 있으며,

학교의 장 등이 교원 등을 분리조치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표 3] 분리조치, 업무배제가 포함된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학교의 장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2	교육공무원법 (제2208390호)	김문수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피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 보고(안 제44조의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393호)	안상훈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4	교육공무원법 (제2208645호)	윤상현 의원	2025.3.4./ 2025.3.5.	· 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배제, 분리조치 가능(안 제44조제2항)
5	대안교육기관법 (제2208531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17조의2)
6	사립학교법 (제2208533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53조의6)
7	초·중등교육법 (제2208524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4)
8	초·중등교육법 (제2209769호)	김대식 의원	2025.4.11./ 2025.4.14.	·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2 등)
9	학교폭력예방법 (제2208139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 가능(안 제20조의6)

주: 개정법률안명 - 의안번호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③ 심의결과 처리 등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59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위원회가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3항), 임용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교원을 조치하도록(제4항) 규정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을 포함한 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⁵⁾ 심의결과에 따라 휴직, 면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한 현행 시·도교육청별 규칙에서는,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되, 조치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임용권자가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5)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각 호의 내용 생략)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각 호의 내용 생략)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각 호의 내용 생략)

6) 「인천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 타 교육청 규칙의 내용도 유사하여 예시로 제시함 제4조(설치)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심의절차 등)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2조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관계 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 심의사항, 심의결과 처리 등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37호, 2025.2.13.)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 4] 심의위원회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091호)	고동진 의원	2025.2.12./ 2025.2.13.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2	교육공무원법 (제2208113호)	박덕흠 의원	2025.2.12./ 2025.2.13.	·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 (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3조의3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138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4	교육공무원법 (제2208153호)	김기현 의원	2025.2.14./ 2025.2.17.	·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45조의2 신설)
5	교육공무원법 (제2208160호)	고민정 의원	2025.2.14./ 2025.2.17.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휴직교원 복직시 심의 의무화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6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 (안 제44조의2)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7	교육공무원법 (제2208232호)	윤준병 의원	2025.2.18./ 2025.2.19.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안 제44조의3 신설 등)
8	교육공무원법 (제2208390호)	김문수 의원	2025.2.24./ 2025.2.25.	-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 -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9	교육공무원법 (제2208645호)	윤상현 의원	2025.3.4./ 2025.3.5.	- 학교의 장이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배제, 분리조치, 휴직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 (안 제58조의3) 직무배제: 일부수정 -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유사한 분리 조치를 규정하는 수 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안 제59조의2)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수용 - 행정·재정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소속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 다만,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법제화를 포함하여 현재 수 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논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조치로 이어질 경우, 교원 임용권의 본질적 제한이라는 비판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권한과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간의 법적 균형이 정교하게 고려되어야 함.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일부수정

- 사립학교 교장 및 교원과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적 고용관계’이며, 학교 내 행정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교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관등에 규정함이 원칙인 바, 학교장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직무배제 내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권한을 법률로써 따로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학교법인과 유지경영학교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의 직무배제 여부 등에 대해 1차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 학교법인과 유지경영학교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응하여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교육감 소속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189